##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신규등록을 하려는 자동차가 반품으로 말소등록되거나 하자가 발생한 자동차인 경우 구매자가 자동차제작·판매자등으로부터 이를 고지받았다는 사실을 시·도지사가 확인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자동차관리법이 개정(법률 제19980호, 2024. 1. 9. 공포, 2025. 1. 10. 시행)됨에 따라, 자동차제작·판매자등이 고지하여야 하는 하자의 범위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양도인의 동의 없이 자동차 이전등록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자동차매 매업자가 이전등록을 알선하는 경우 양도인의 인감증명서 첨부를 의무 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0000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 · 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 자동차등록규칙 일부개정령안

자동차등록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1항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10. 별지 제10호의2서식의 반품 및 하자 수리 이력 고지 사실 확인서 (법 제8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자동차의 경우만 해당한다) 제2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27조의2(반품 및 하자 수리 이력의 고지 등)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등록관청은 구매자가 법 제8조의2에 따른 고지를 받았다는 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신규등록 신청을 받은 즉시 전산정보처리조직 및 별지 제10호의2서식의 반품 및 하자 수리 이력 고지 사실 확인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 ② 법 제8조제1항제2호 및 법 제8조의2제2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고장 또는 흠집 등 하자"란 자동차 판매가격(별지 제10호서식 의 자동차제작증에 표시하는 공급가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3을 초과 하여 수리비(타이어, 창유리, 휠, 범퍼 및 등화장치를 공장 출고 당시 와 동일하게 교환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은 제외한다)가 소요되는 하자 를 말한다. 이 경우 수리비는 「보험업법」 제176조에 따른 보험요율 산출기관에서 산출한 비용으로 한다.

제33조제1항제2호가목 중 "매도하거나 알선한"을 "매도한"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1호의2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3호서식의 제목 "자동차등록원부(갑) 등본·초본"을 "자동차등록원부(갑) 등본·초본"을 "자동차등록원부(갑) 등본·초본(약칭: 자동차원부갑, 약호: C257A)"으로 한다. 별지 제4호서식의 제목 "자동차등록원부(을) 등본·초본"을 "자동차등록원부(을) 등본·초본"을 "자동차등록원부(을) 등본·초본"을 "자동차등록원부(을) 등본·초본"을 "자동차등록원부(을) 등본·초본(약칭: 자동차원부을, 약호: C257B)"으로 한다. 별지 제10호서식 중 "「자동차관리법」 제8조의2제2항"을 "「자동차관리법」 제8조의2제1항"으로, 같은 서식 중 "적어야"를 "비고란에 적어야"로 한다.

별지 제10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20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7조제1항제10호, 제27조의 2, 별지 제10호서식 및 별지 제10호의2서식의 개정규정은 2025년 1월 10일부터 시행하며,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1호의2서식,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및 별지 제20호서식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 17
	자 동 차 등 록	<del>부</del> 증			
제 호	최초등록일 :	년	월 일		
① 자동차등록번호	② 차 종			③ 용 도	
④ 차 명	⑤ 형식 및 저 월	작연			
⑥ 차 대 번 호	⑦ 원동기형식	4			
8 사 용 본 거 지					
소유자 ⑨ 성명(명칭)	⑩ 생년월일 (법인등록반	년호)			

「자동차관리법」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등록하였음을 증명합니다.

※ 유의사항 : 사용연료의 종류가 전기 또는 수소인 자동차의 경우 ①번란의 '원동기형식'은 '구동전동기형식'을 말합니다.

년 월 일

등록관청명

직 인

1. 제 원						
11) 제원관리번호						
(형식승인번호	)					
12 길이	mm	13 너비	mm			
14 높이	mm	15 총중량	kg			
16 승차정원	명	⑰ 최대적재량	kg			
⑱ 배기량			cc, (Ah)			
(구동축전지 용량)			00, (/#/)			
⑲ 정격출력		Ps/rpm, (kW/	rpm), [kW/rpm]			
20 기통수						
(구동축전지정격전압)		기	통, (V), [kW]			
[연료전지 최고출력]						
<ul><li>② 연료의 종류·</li><li>여비</li></ul>		lem/1 (1	km/kWh),[km/kg]			
유의사항 : ①8~②	W에서 사용여:					
'' 크 '' 이 '' '' '' '' '' '' '' '' '' '' '' '						
「자동차관리법						
경우 최대적재량						
는 최대수직하중			<u></u> 합니다.			
2. 등록번호판	교무 및 몽업	<u>'l</u>	<u> </u>			
② 구분 ②	번호판발급일	24 봉인일	② 발급대행자 확인			
3. 저당권등록/	<b>나실(저당권</b> 등	등록의 내용은	자동차등록			
원부(을)를 열람・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6 구분(설정 또	는 말소)		27 일 자			

4. 검사	유효기간						
<ul><li>28 연월일</li><li>부터</li></ul>	<ul><li>(2) 연월</li><li>일까지</li></ul>	③ 검사 시행장소	③] 주행기	② 검사 책임자확인	፡፡፡ 검사구분		
주의사항	주의사항 : ⊗항 첫째란에는 신규등록일을 적습니다.						
비고	추고(최드	E)가격(브 <sup>-</sup>	가가치세 제	φ  ) ·			

210mm×297mm[백상지 120g/㎡ 또는 백상지 80g/㎡]

#### 자동차소유자 유의사항

- 주소・성명 등의 변경등록(법인과 외국인에만 해당함. 「자동차등록령」제22조제2항에 따라 개인은「주민등록법」에 따른 정정신고 또는 전입신고를한 경우, 변경등록의 신청을 한 것으로 봄)
  - 전입신고일 또는 사유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새로 운 사용본거지의 시·군·구청 또는 자동차등록관청 에 주소·성명 등의 변경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위 반 시 관련 규정에 따른 과태료).
- 자동차소유자는 정기검사 또는 자동차종합검사를 반드 시 받아야 합니다(유효기간 경과 시 관련 규정에 따른 과 태료).
- 튜닝승인
  - 자동차의 튜닝을 하려는 경우에는 한국교통안전공 단에서 튜닝승인을 받아야 합니다(위반 시 관련 규 정에 따른 징역 또는 벌금).
- 이전등록
  - 양수인은 이전사유별로 다음의 기간 내에 이전등록 신청을 해야 합니다(위반 시 관련 규정에 따른 범칙 금).
    - 매수한 날부터 15일 이내, 증여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그 밖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
  - 양수인이 15일 이내에 이전등록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양도인도 양수인을 대신하여 이전등록신 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말소등록
  - 사유(폐차요청 등) 발생일부터 1개월(상속의 경우에 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에 관련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말소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위반 시 관련 규정에 따른 과태료).
- 무단방치 자동차의 강제처리
  - 자동차를 도로 등에 무단방치하는 경우에는 폐차
    등 강제처리대상이 됩니다(위반 시 관련 규정에 따른 징역 또는 벌금).

### 자동차등록증

○○시・도

5. 변경등록사항						
③ 성명	③ 등록일자	③6 확인				

6. 튜닝사항		
☞ 내용	⊗ 검사일자	③ 검사책임자확인
7. 기타		
40 내 용	④ 일자	42 확인

■ 사공사	■ 사동자등독규식 [멸시 제1호의2서식] (앞쪽)											
	저속전기자동차등록증											
제 <u>3</u>	<u>-</u>		최:	초등	록일	:	년		월	일		
① 자동	) 자동차등록번호										③ 용 도	
4 차 명				⑤ 월	형식	및	제작연	1				
⑥ 차 대	번 호			7	원동기	기향	심식					
⑧ 사 용	- 본 거 지							·				
소유자	⑨ 성명(명칭)			10	생년원 (법인원	월일 등록	[ ·번호)					
「자	동차관리법」	제8조에 따리	라 위와 같 년	0	등록 <b>ㅎ</b> 월	i 구 오	음을 일	증[	명합니디		관청명	격 인
수·구천 ㅇ 지정된	기자동차는 「자동 청장이 지정한 운행 운행구역 외의 경 ! 이하의 과태료기	행구역 안에서면 당소에서 저속전	난 운행할 수 선기자동차를	있습	·니다.							
						_						
1. 제 운				41	4. 김	심사	유효기	간				
<ul><li>(해 제원관련</li><li>(형식승역</li></ul>	-			Ш	28 연 일부터		② 연원 일까지		ଐ 검사 시행장소	③1주행거리	② 검사 책임자확인	<ul><li>33 검사</li><li>구분</li></ul>
12 길이	mm	(3) 너비	mn	n								
14 높이	mm	15 총중량	kç									
16 축전지:	용량 Ah	☞ 정격출력	kW/h	۱								
(B) 승차 정원	월 명	⑨ 최대적재량	kç									
<ul><li>② 축전지정</li></ul>	J격전 V	② 1회 충전 조레고고										

(11) 제원관리번호								
(	형식승인	번호	<u>5</u> )					
12	길이		mm	13 너비	mm			
14)	높이		mm	(5) 총중량	kg			
16	축전지용	량	Ah	☞ 정격출력	kW/h			
18 :	승차 정원		명	⑤ 최대적재량	kg			
20 압	축전지정각	격전 V		<ul><li>② 1회 충전</li><li>주행거리</li></ul>	km			
2.	등록번	호핀	교부 및 통	흥인				
22	구분	23	번호판발급일	② 봉인일	② 발급대행 자확인			
3. 등=	저당권 록원부(	등록 을) <del>[</del>	록사실(저당군 를 열람ㆍ확'	권등록의 내용 인하시기 바람	용은 자동차 랍니다)			
🐠 구분(설정 또는 말소)					② 일자			

4. 검사	·유효기긴	-				
②※ 연월 일부터	② 연월 일까지		<ul><li>③1 주행</li><li>거리</li></ul>	② 검사 책임자확인		
주의사항 : ②항 첫째란에는 신규등록일을 적습니다.						
비 고 - 자동차 출고(취득)가격(부가가치세제외):						

210mm×297mm[백상지 120g/m² 또는 백상지 80g/m²]

#### 자동차소유자 유의사항

- 주소・성명 등의 변경등록(법인과 외국인에만 해당함. 「자동차등록령」제22조제2항에 따라 개인은 「주민 등록법」에 따른 정정신고 또는 전입신고를 한 경우, 변경등록의 신청을 한 것으로 봄)
  - 전입신고일 또는 사유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새로운 사용본거지의 시·군·구청 또는 자동차등록관청에 주소·성명 등의 변경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위반 시 관련 규정에 따른 과태료).
- 자동차소유자는 정기검사 또는 자동차종합검사를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유효기간 경과 시 관련 규정에 따른 과태 료).
- 튜닝승인
  - 자동차의 튜닝을 하려는 경우에는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튜닝승인을 받아야 합니다(위반 시 관련 규정에따른 징역 또는 벌금).
- 이전등록
  - 양수인은 이전사유별로 다음의 기간 내에 이전등록 신청을 해야 합니다(위반 시 관련 규정에 따른 범칙 금).
    - 매수한 날부터 15일 이내, 증여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그 밖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
  - 양수인이 15일 이내에 이전등록신청을 하지 않는 경 우에는 양도인도 양수인을 대신하여 이전등록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말소등록
  - 사유(폐차요청 등) 발생일부터 1개월(상속의 경우에 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관련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말소등록을 신청해야 합니 다(위반 시 관련 규정에 따른 과태료).
- 무단방치 자동차의 강제처리
  - 자동차를 도로 등에 무단방치하는 경우에는 폐차 등 강제처리대상이 됩니다(위반 시 관련 규정에 따른 징역 또는 벌금).

## 자동차등록증

OO시 · 도

5. 변경등록사항		
③ 성명	③ 등록일자	③ 확인

6. 튜닝사항		
③ 내용	③ 검사일자	③ 검사책임자확인
7. 기타		
40 내 용	41) 일자	② 확인

# 반품 및 하자 수리 이력 고지 사실 확인서

	성명(법인명)	생년월일(사업자 또는 법인등록번호)			
양수인	주소				
	※ 상기 본인은 하기 내용에 대하여 고지 받았음을 확	인합니다.	(서명 또는 인)		
	차 종		제작연월일		
자동차	차명(형식)		양도연월일		
정보	차대번호		계약번호		
	공급가액(부가세 제외)				
	구 분		해당 여부(○, X)		
	반품으로 말소등록된 자동차				
	제작사의 공장 출고일 이후 인도 이전에 고장				
고 지	또는 흠집 등 하자가 발생한 자동차 주요 내용 :				
내 용					
91 0					

「자동차관리법」제8조의2에 따라 반품으로 말소등록된 자동차 여부(다만, 법 제47조의2의 교환 또는 환불 요구에 따라 반품된 자동차의 경우에는 그 사유를 포함한다), 제작사의 공장 출고일 이후 인도 이전에 발생한 고장 또는 흠집 등 하자에 대한 수리 여부와 상태를 위와 같이 자동차 양수인에게 고지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제작·조립·수입자(이들로부터 자동차의 판매 위탁을 받은자)

인

210mm X 297mm(일반용지 60g/m²)

		자동차말소등록사실증명서	· /
제	ই(No. )	(Certificate of De-registration of Motor Vehicle	le)
자동차의 표 시 (Vehicle Details)	자동차등록번호 (Registration No.)	차종 및 주행거리 (Vehicle Type and Mileage)	
	차명 (Model)	차대번호 (Chassis No.)	
	원동기형식 (Type of Engine)	모델연도 (Model Year)	
	제원관리번호 (Specification Management No.)	용도 (Vehicle Use)	
	최초등록일 (Date of Initial Registration)	사업용사용기간 (Period of Business Usage)	
소유자 (Owner)	성명(명칭) (Name)	생 년 월 일 (법인등록번호) (Date of Birth (Corporate Registration No.))	
	소등록일 f De-registration)	증명서 용도 (Use of Certificate)	
	는 등록 구분 for De-registration)	권리관계 여부 (Relation of Rights) 압류: (Seizure) 저당권: (Mortgage)	건 건
[-1] = =1	- 기기비 - 기10구 1	기 「기도키드로그키 - 케40고세 메기 마ઠ드로 1	10100

「자동차관리법」 제13조 및 「자동차등록규칙」 제40조에 따라 말소등록 되었음을 증명합니다.

This is to certify that the above vehicle was de-registered in accordance with Article 13 of the Motor Vehicle Management Act and Article 40 of the Motor Vehicle Registration Rules.

년 월 일 (Year Month Day)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

Special Metropolitan City Mayor, Metropolitan City Mayor, Do Governor (Head of a Si / Gun / Gu)

뒤쪽의 유의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3331-10211일 96.10.4 승인

210mm×297mm (일반용지 60g/m²)

(<u>0</u>)

#### 유의사항

- 1. 말소등록된 자동차를 다시 등록하여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자동차등록령」 제20 조 및 아래의 구분에 따라 신규등록신청이 가능하며, 그 신청기간을 경과한 때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 2. 말소등록 당시에 압류 및 저당권 등이 등록된 자동차는 「자동차관리법」제13조제 10항에 따라 해당 권리관계를 해소한 경우에만 신규등록이 가능합니다.

# 말소등록 사유 신규등록 가능기간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화물자 ○ 말소등록일부터 3개월 이내 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면허 · 등록 • 인가 또는 신고가 실효되거나 취소되 어 말소등록된 경우 ○ 자동차를 교육·연구목적으로 사용하는 등 「자동차등록령」 제31조제5항에 해 당하여 말소등록된 경우 ○ 자동차의 차대가 등록워부상의 차대와 달라 직권으로 말소등록된 경우 ○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 되어 직권으로 말소등록된 경우 ○ 도난으로 말소등록된 경우 ○ 해당 자동차를 회수한 날부터 3개월 이내 ○ 자동차를 제작·조립 또는 수입하는 자 ○ 말소등록일부터 6개월 이내 (이들로부터 자동차의 판매위탁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에 반품하여 말소등록된 경우 ○ 수출로 말소등록된 경우 ○ 말소등록일부터 1년 이내

## 신・구조문대비표

아 혂 개 정 제27조(신규등록 신청 등) ① 등 제27조(신규등록 신청 등) ① ---록령 제18조에 따라 자동차의 신규등록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 지 제9호서식의 자동차신규등 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 등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 다. 1. ~ 9. (생략) 1. ~ 9. (현행과 같음) <신 설> 10. 별지 제10호의2서식의 반품 및 하자 수리 이력 고지 사실 확인서(법 제8조제1항 각 호 에 따른 자동차의 경우만 해 당한다)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27조의2(반품 및 하자 수리 이 <신 설> 력의 고지 등) ① 법 제8조제1 항에 따라 등록관청은 구매자가 법 제8조의2에 따른 고지를 받 았다는 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신규등록 신청을 받은 즉시 전 산정보처리조직 및 별지 제10호 의2서식의 반품 및 하자 수리 이력 고지 사실 확인서를 확인 하여야 한다.

제33조(이전등록 신청) ① 법 제1 2조에 따라 이전등록을 신청하 려는 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이전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 다. 이 경우 등록관청은 전산정 보처리조직 및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자동차의 사용본거지확인정보, 자동차등 록원부 및 상속 사실을 증명할

② 법 제8조제1항제2호 및 법 제8조의2제2항에서 "국토교통 부령으로 정하는 고장 또는 흠 집 등 하자"란 자동차 판매가격 (별지 제10호서식의 자동차제작 증에 표시하는 공급가액을 말한 다)의 100분의 3을 초과하여 수 리비(타이어, 창유리, 휠, 범퍼 및 등화장치를 공장 출고 당시 와 동일하게 교환하는데 소요되 는 비용은 제외한다)가 소요되 는 하자를 말한다. 이 경우 수리 비는 「보험업법」 제176조에 따른 보험요율 산출기관에서 산 출한 비용으로 한다. 제33조(이전등록 신청) ① -----

수 있는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상속의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거나 전산정보처리조직 및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서류(법인등기사항증명서는 제외한다)를 첨부하도록 하여야한다.

- 1. (생략)
- 2. 양도인의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같은 법제7조제5항에 따른 전자본인서명확인서의 발급증[매매로인한이전등록의경우에만참부하며,인감증명법시행령」제13조제3항에 따라인자증명서의사용용도란에자동차매도용임과양수인의성명·주소(법제53조에따라등록한자동차매대업자의경우사업장소재

1. (현행과 같음)
2

지) · 주민등록번호(법인일 경 우 법인명칭 • 주소 • 법인등록 번호)가 기재되어 발급된 것 이어야 하고, 본인서명사실확 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 서 발급증의 경우 각각 부동 산 관련 외의 용도란 또는 용 도란에 자동차 매도용임과 양 수인의 성명 · 주소(법 제53조 에 따라 등록한 자동차매매업 자의 경우 사업장소재지) • 주 민등록번호(법인일 경우 법인 명칭・주소・법인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있는 것이어야 한 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 하다.

가. 법 제53조에 따라 등록한자동차매매업자가 <u>매도하</u><u>거나 알선한</u> 경우

나. • 다. (생 략)

3. ~ 6. (생략)

② (생략)

•
 -1
가
<u>매도한</u> -
나.•다. (현행과 같음)
3. ~ 6.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